#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3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조경태·정성국·이양수

엄태영 · 김상욱 · 김소희

김예지 • 안상훈 • 고동진

김태호 • 박정하 • 우재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로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생산업 또한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생산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소금생산을 위하여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를 목적으

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 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염전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 관(排水管) 설치를 목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드)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내로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나		
점용・사용이 「수산업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			
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			
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 기 위한 경우: 15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저 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 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 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 용료 ·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결우 또는 「소금
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세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의 징수) 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15. (생 략) ② ~ ⑧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소금산업진홍법」 제2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 하여 염전 밖에 인수관(引水 管)이나 배수관(排水管) 설치 를 목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